

이화인문과학원 규정

2007. 8. 21. 제정

2016. 6. 16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(이하 “과학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과학원은 인문학 전반에 걸친 영역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 연구와 출판
2. 자료의 수집·정리·편찬·간행
3. 연구의 사회적 소통과 관련한 사업
4.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
6. 기타 과학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3조(원장·부원장) ① 과학원에 원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.

- ② 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- ③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과학원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조직) ① 과학원에 연구팀 및 행정실을 둔다.

- ② 연구팀은 학술연구,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및 연구의 사회적 소통과 관련한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행정실은 출판, 정보자료의 관리, 서무 회계와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.

[전문개정 2016.6.16.]

제5조 삭제 <2016.6.16.>

제6조(연구위원 등) ① 과학원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1.27.>
-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연구원 등) ① 과학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

이화인문과학원 규정

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8조(행정인력) 과학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10.7.7.>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인문과 학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처장, 연구처장, 원장, 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과학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
2. 과학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과학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
5. 기타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사업 계획 및 보고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7.>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3. 운영위원 명단

제11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과학원의 경비는 과학원 기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과학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과학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부칙 <2007. 8. 21. 제정>

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7. 7. 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1. 27.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인문학연구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2013. 3. 21. 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6. 16.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